

#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40
----------	-----

2023. 11. 27.(월)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3년 10월 24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5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11월 16일

-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신형근 행정국장)

### 가. 제안사유

○ 스마트 농업기계 실습교육장 조성은 농업기술원 내 기존 협소한 야외교육장을 확대 조성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업기계 실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전천후 교육장 2,550㎡, 격납고 660㎡, 운전코스 및 교육생 대기실 2,000㎡이며, 사업비는 36억 원임.

○ 제천소방서 차고 건축은 제천소방서 청사의 기존 출입로가 급커브와 급경사로 되어 있고, 출입로 도로에 인근 건물 출입 차량의 노상주차로 출동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제천시에서 제공하는 부지에 철근콘크리트조 2층 건물을 건축하여 대형소방차량 주

차와 교육장 및 사무실로 활용하여 긴급 출동태세를 갖추고 부족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사업규모는 철근콘크리트조 2층 520㎡이며, 사업비는 25억 9백6만 9천 원임.

- 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 재산의 취득

#### 《스마트 농업기계 실습교육장 조성》

일반회계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괴정리 443-1, 443-2, 444, 445번지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사업규모 : 5,210㎡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 사업비 : 36억 원(국비 균특 50%, 도비 50%)
  - 시설비 : 34억 1천9백만 원(설계비 9천3백만 원),
  - 감리 및 기타 : 1억 8천1백만 원
- 사업내용 : 농업기계 전천후 교육장(2,550㎡), 격납고(660㎡), 운전코스 및 교육생 대기실(2,000㎡) 조성

#### 《제천소방서 차고 건축》

특별회계

- 위 치 : 제천시 모산동 427, 429-1번지

- 사업기간 : 2024년 ~ 2025년
- 사업규모 : 520m<sup>2</sup>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 사업비 : 25억 9백6만 9천 원
  - 공사비 : 19억 3천6백3십5만 9천 원(설계비 : 9천8백9만 2천 원)
  - 감리비 : 4억 1천5십7만 1천 원
  - 시설부대비 : 1천8백4십4만 7천 원
  - 농지전용비 : 4천5백6십만 원
- 사업내용 : 1층 차고, 심폐소생술 교육장, 화장실(총 350m<sup>2</sup>)  
2층 의용소방대 사무실(170m<sup>2</sup>)

###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스마트 농업기계 실습교육장 조성과 제천시 소방서 차고 건축 총 2건임.
- 첫째, 스마트 농업기계 실습교육장 조성의 건은,
  -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건물 2개 동과 기타 1식 건축으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위치한 농업기술원 내 부지 4필지(총 부지면적 9,169m<sup>2</sup>)에 농업기계 전천후 교육장(2,550m<sup>2</sup>), 격납고(660m<sup>2</sup>), 운전 코스 및 교육생 대기실(2,000m<sup>2</sup>)의 교육시설을 건축하려는 것임.
  - 트랙터와 굴착기의 경우 기계가 작동하기 위한 최소 회전반경 등의 환경적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장소가 협소하여 2~3대가 동시에 교육을 진행할 경우 상호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 천장 등의 구조물이 부재하여 호우, 폭설 등에 의해 교육 일정의 원활한 진행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능사 시험 대비와 농촌지역에서의 좁은 농로와 코너 주행, 후진 등 농기계 조작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운전코스 교육장 시설 건축이 필요함.
- 따라서, 농업기계 교육 진행상의 안전성 확보와 원활한 교육 일정 추진 및 농기계 조작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부지 확대와 교육장 시설 증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제천소방서 차고 건축의 건은,

- 총사업비 25억 9백6만 9천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건물 1개 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제천시 모산동 제천소방서 옆 4차선 도로에 인접한 부지 2필지(총 부지면적 2,695㎡)를 제천시가 제공하고, 건축은 충청북도가 1층(350㎡) 차고지, 심폐소생술교육장, 화장실, 2층(170㎡)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건축하려는 것임.
- 현 청사는 차고가 부족하여 차고지 외부에 구급차, 음압구급차, 순찰차 등 11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며,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신속한 출동에 방해 요인이 됨.
- 또한, 청사 앞 출동로에 급커브와 급경사로 인하여 대형소방차량의 출동 시간이 지연되고, 옹벽과 노상에 주차된 차량으로 시야 확보가 곤란하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상존함.

- 2023년도 현재 정원 209명, 현원 197명으로 최근 5년간 정원 60명, 현원 68명이 증가하여 사무실 및 교육 공간이 부족한 상황임.
- 현 제천소방서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최대 20%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현 건폐율이 19.94%로 더 이상 건축 및 증축이 불가함.
- 따라서, 4차선 도로에 인접한 부지에 대형소방차량 차고를 건축하여 긴급출동 시 시야 방해와 급경사로 인한 신속 출동 방해 요인을 제거하고, 현장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교육 공간 및 사무실 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440
----------	-----

제출연월일 : 2023년 10월 2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스마트 농업기계 실습교육장 조성은 농업기술원 내 기존 협소한 야외 교육장을 확대 조성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업기계 실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 사업규모는 전천후 교육장 2,550㎡, 격납고 660㎡, 운전코스 및 교육생 대기실 2,000㎡이며, 사업비는 36억원임
- 제천소방서 차고 건축은 제천소방서 청사 기존 출입로가 급커브·급경사로 되어 있고, 출입로 도로에 인근 건물 출입 차량의 노상주차로 출동의 어려움이 있어 제천시에서 대도로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제공할 예정임
- 이에 긴급 출동태세를 갖추고 부족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자 제천시에서 제공하는 부지에 차고를 건축하여 대형차량 주차와 교육장 및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하며, 사업규모는 지상 2층 520㎡이며, 사업비는 약 25.1억원임
- 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 재산의 취득

《스마트 농업기계 실습교육장 조성》

일반회계

- 위치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괴정리 443-1, 443-2, 444, 445번지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규모 : 5,210㎡

- 사업비 : 36억원(국비 균특 50%, 도비 50%)
  - 시설비 3,419백만원(설계비 93백만원), 감리 및 기타 181백만원
- 사업내용 : 농업기계 전천후 교육장(2,550m<sup>2</sup>), 격납고(660m<sup>2</sup>), 운전코스 및 교육생 대기실(2,000m<sup>2</sup>) 조성

### 《제천소방서 차고 건축》

특별회계

- 위치 : 제천시 모산동 427, 429-1 ※ 부지는 제천시 제공
- 사업기간 : 2024. ~ 2025.
- 사업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연면적 520

구분	용도	면적
1층	차고, 심폐소생술교육장, 화장실	350m <sup>2</sup>
2층	의용소방대 사무실	170m <sup>2</sup>

- 사업비 : 약 25.1억원

(단위:천원)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농지전용비
2,509,069	1,936,359	98,092	410,571	18,447	45,600

### 3.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 202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건물	2개동	3,210	3,450,000				
	기타	1식	2,000	150,000				
1	토지							
	건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괴정리 443-1, 444, 445	3,210	3,450,000	2024	스마트 농업기계 실습교육장 조성 (전천후 교육장, 격납고)		신축
	기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괴정리 443-1, 443-2	2,000	150,000	2024	스마트 농업기계 실습교육장 조성 (운전코스 및 대기실)		신축
2	토지	이하여백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 202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특별회계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건물	1개동	520	2,509,069	2025			
	기타							
1	토지							
	건물	제천시 모산동 427, 429 -1	520	2,509,069	2025	제천소방서 차고 건축		증축
	기타							
2	토지	이하여백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 관계 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b>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b>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p> <p>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b>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b>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li> <li>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li> </ol> <p>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li> <li>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li> <li>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li> <li>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li> </ol>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b>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b>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li> <li>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li> </ul> </li> <li>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천제곱미터</li> <li>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천제곱미터</li> </ul> </li> </ol> <p><b>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b>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b>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b>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li> <li>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li> <li>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li> <li>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li> <li>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li> </ol>